

장애인 관련법 제·개정 논의의 현황

1. 현황

1) 정화원의원실

□ 준비법안 : 장애인기본법,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

□ 발의 시기 : 올 정기국회 예상

□ 법의 성격

- 기본법에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급여와 서비스법으로 재규정

□ 주요 내용

○ 법의 목적 규정에 있어 자립생활의 지원을 새롭게 명시하였으며, 평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(1조)

○ 장애인의 정의를 사회적 참여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의하였고,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하였음(2조)

○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음 (3조)

○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항목은 삭제하였음. 장애인복지정책의 국가적 의무와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를 규정 할 필요가 없음. 또한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가족의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한 노력이 의무사항은 아님(5조)

○ 장애인복지정책이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원차원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보호, 활동보조인 파견등 적절한 시책을 우선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음 (6조)

○ 보호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장애인과 관련자에 대한 배려로 정책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함. (7조)

○ 장애인의 차별조항에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며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규정 하였음(8조)

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책임과 의무로 확대하였고 여성장애인의 권익부분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관하였음(9조)

○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삭제하고 기본법에서 대통령산하의 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함(10조, 11조)

○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관하여 명시함(12조)

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.폐쇄자막.화면해설 등의 방영의 임의 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, 또한 수화통역 뿐만 아니라 점자자료제공을 명시하여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.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.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항목을 신설함(20조)

○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으로 일반국민, 학교,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과 관련한 공익광고, 교육, 홍보사업 등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함(22조의2)

○ 자립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 지원,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,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새롭게 규정함 (22조3)

○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장애인기본법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을 명시함

○ 장애인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충실한 장애인정책수립과 연구를 유도하였음(28조)

○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등의 제공을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장하였음(32조)

○ 활동보조비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,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(32조의2)

○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주거지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(36조 4)

○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장하였음(46조)

○ 보호조치를 지원조치로 바꾸고 그에 따른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새롭게 추가하여 장애인]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꾀하였음(47조)

○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명시함으로 그와 관련된 시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(48조5)

○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인권침해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음(51조)

- 단체의 보호·육성은 삭제하고 장애인기본법으로 이관하였음(53조)
- 현행 복지법에서 명시되었으나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삭제하였음(54조)
-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개명함 (5장)
-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 점역·교정사,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첨가하였으며 예산 보조를 명시하였음(62조)
- 과태료 항목에 명시되었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의 사용을 벌칙으로 강화하였음 (78조, 80조)

□ 쟁점

- 대통령 산하의 장애인위원회

2) 장향숙의원실

□ 발의 시기: 정기국회 예상

□ 주요 개정사항

- 동법상 목적에서 직업재활 중 재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직업으로 용어 중 재활을 직업으로 수정하였고, 장애인의 자립을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변경함(안 제1조)
-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(안 제2조)
-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에서 보호라는 시혜적 용어를 지원으로 변경함(안 제6조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신설(안 제7조의2)
- 장애인 복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외에 관계부처의 경우 복지보다는 정부정책에 의해 시책을 추진하므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, 이동보장분야 및 채용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내용에 추가하는 한편, 관계부처별로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1조)
- 중앙행정기관별로 장애인정책업무의 기획·조정·평가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두도록 신설(안 제11조의3)
- 정부기념일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을 매년 4월 20일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과 동일하게 12월 3일로 변경하고 기념행사 등을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함(안 제12조)
-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고, 각종 국가적 행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함(안 제20조)

○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('03.12.29)을 통해 주요 건축물·교통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 외에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시 수화통역·안내 보조 서비스 등 인적서비스가 신설되었으므로 편의시설을 편의증진으로 변경(안 제22조)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건설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 할당분양제 도입근거 마련(안 제24조)

○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하고, 타부처 이관 추진 업무인 체육진흥 업무를 제외하는 한편, 종합연구기능을 강화(안 제26조)

○ 동법에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장애인복지상담원제를 폐지함(안 제30조)

○ 장애연금제 도입 등 장애범주 및 등록상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별 장애판정위원회 구성·운영하여 장애판정을 진단의료기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관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장애인등록 기능 여부를 판정하게 하도록 제도 보완(안 제29조)

○ 장애인보조견표지발급 실시과정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였던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정내용을 추가(안 제36조)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)

○ 장애수당의 종류를 물리적 환경접근 지원수당 , 정보접근지원,생활지원수당 및 건강지원수당 등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수당의지급을 의무조항으로 함(안 제44조)

○ 재활의 연구는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,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자립생활지원으로 수정(안 제46조 및 제47조)

○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는 물론,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보조, 활동보조인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을 활성화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부 조항을 변경(안 제00조 내지 제00조)

○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단체로,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장애인단체협의회로 수정(안 제53조 및 제54조)

○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수정(안 제55조)

○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격의 범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의 양성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(안 제62조)

○ 의지·보조기기사 국가자격을 별도의 대체법안 입법시 정비를 전제로 관련조문 삭제(안 제63조 내지 제69조)

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보호하거나 이용

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,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74조)

□ 쟁점

- 장애인기본법과의 관계
- 각종 수당의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관계

2. 발제자의 의견

□ 법체계에 대한 의견

- 장차법이 권리중심의 법안이나 모든 권리를 규정하기는 어려움(예를 들어 생존권)
- 따라서 장애인기본법에서 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하고, 이를 위한 기구 및 전달체계, 계획 및 평가,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.
- 장차법 준비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의 성격이 모호한 만큼 장차법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법적인 성격으로 명료화(각종 간주조항 삭제)
- 기타 개별 법률들은 적극적 조치(급여와 서비스 등)에 대해 실체법적인 성격으로 강화
- 부족한 영역별 법률안 마련(문화, 정보 등)
가급적이면 기존의 법률에 장애인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을 듯.
불가능하면 새로운 영역별 별도의 법률안 마련

□ 추진 방식

- 기본법제정과 복지법 개정은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
- 개별 의원실 중심이 아니라 양 국회의원실, 장애인단체, 장애인전문가, 법률 전문가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함
- 추진 일정 : 정기국회에서는 장차법에 집중하고 그 동안 다른 법률안들을 검토함. 장차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법률 제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
- 쟁점: 양 국회의원실에서 이를 수용할지가 관건